

KLI 고용·노동 리포트

K o r e a L a b o r I n s t i t u t e

2014. 9. 15 | 통권 제52호(2014-04)

최저임금을 받는 세대의 경제적 실태

[요약]

- 최저임금 결정 시 개인의 경제적 상황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세대(family)의 경제적 상황이 어떤지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함.
 - 만약 단독세대가 아닌 세대의 경제적 상황이 단독세대보다 못하다면 최저임금 결정 시 고려해야 할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기 때문임.
- 한국노동패널 15차 조사의 결과를 이용하여 가구주 또는 가구주의 배우자가 최저임금 또는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세대(family)의 경제적 실태에 대해 살펴보았음.
 - 한국노동패널에는 가구(household)의 구분만 있지 세대의 구분이 없어서 세대를 따로 식별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가구주와의 관계를 이용하였음.
- 비단독세대의 경제적 상황이 결코 단독세대보다 낮다고 할 수 없음.
 - 배우자가 임금근로자로 일을 하고 있는 세대의 경제적 상황은 상대적으로 양호함.
 - 그러나 배우자가 일을 하지 않고 세대주가 최저임금 또는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세대는 단독세대와 비슷한 수준의 소득으로 2.5배의 세대원이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상황임.
 - 더구나 세대주가 최저임금 또는 최저임금 미만을 받을 때 배우자가 임금근로자로 일을 하는 세대보다 배우자가 일을 하지 않는 세대의 비율이 훨씬 높는데,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 배우자가 없지만 다른 세대원이 존재하는 세대의 경제적 상황도 단독세대에 비해 낮지 않음.

연구의 범위

- 본고는 임금근로자 개개인이 아닌 최저임금을 받는 세대(family)의 경제적 실태에 초점을 맞춤.
 - 최저임금을 강제하는 이유는 “저임금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여 ... (중략) ...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최저임금법 제정 이유에 적시되어 있음.
 - 최저임금법에는 저임금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최저임금의 결정 기준으로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을 규정하고 있음(최저임금법 제4조).
 - 따라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을 결정함에 있어서 전년도의 미혼 단신근로자의 생계비,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최저임금수준별 영향을 받을 근로자의 수 등을 고려함.
 - 그러나 최저임금이 개개인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만으로는 현재 또는 미래의 최저임금이 얼마나 최저임금법 도입 목적을 달성하는지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음.

분석자료

- 본고는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세대의 상태를 살펴 보기 위해 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KLIPS) 15차(2012년) 횡단면자료를 이용하였음.

- 한국노동패널은 경제활동인구조사와 기술통계량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를 보임.
 - 한 가지 특징적인 차이점만 언급한다면, 한국노동패널은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비해 임금근로자 중 임시직 비율이 낮음.
- 한국노동패널의 이용에 있어 하나의 한계점은 관측치가 많지 않다는 것임.
 - 경제활동인구조사가 32,0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는 데 비해, 한국노동패널은 5,000가구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시행함.
 - 최저임금 또는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근로자가 전체 근로자의 15%가 되지 않으므로 한국노동패널로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세대의 실태를 세밀히 살펴보는 데는 한계가 있음.

임금수준별 개인의 경제적 상황

- 최저임금 이하 또는 비슷한 수준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수가 적지 않음.
 - 한국노동패널에 따르면 전체 임금근로자 중 7.91%¹⁾가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받고 있음.
 - 4.51%의 임금근로자가 최저임금 수준(100~110%)의 임금을 받고 있고, 추가적으로 9.41%의 임금근로자가 최저임금의 110~130%의 임금을 받고 있음.
 -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것은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표 1〉 임금수준별 근로자 수 및 비율

(단위 : 명, %)

(근로자 임금)/(최저임금)	근로자 수	비율
0~70%	402,038	2.29
70~90%	708,007	4.03
90~100%	279,810	1.59
100~110%	792,372	4.51
110~130%	1,653,717	9.41
130~200%	4,430,690	25.22
200% 이상	9,304,380	52.95
전체	17,571,014	100.00

주: 무응답이 6,759명.

1)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는 9.6%임.

〈표 2〉 임금수준별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 및 월 임금

(근로자 임금)/(최저임금)	시간당 임금(천 원) ¹⁾		월 임금(만 원)	
	중간값	평균	중간값	평균
0~70% ²⁾	2,459 (2,732)	1,878 (2,270)	50.0 (50.0)	46.7 (55.5)
70~90%	3,825	3,736	80.0	79.7
90~100%	4,303	4,306	94.0	93.4
100~110%	4,781	4,741	100.0	95.2
110~130%	5,623	5,528	100.0	110.3
130~200%	7,511	7,512	150.0	152.1
200% 이상	14,344	16,710	280.0	309.5

주: 1) 시간당 임금 계산에 이용된 월 근로소득이 만 원 단위로 조사되어서 시간당 임금을 원 단위로 환산할 경우 정확성이 떨어진다
보고 천 원 단위로 표시하였음.

2) () 안의 수는 임금을 받지 않는 임금근로자를 제외하고 계산한 값임.

이용하던 한국노동패널을 이용하던 최저임금 통계를 산출할 때 부업에서 얼마의 임금을 받는지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임. 만약 이를 고려할 경우 최저임금 미준수율 및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 수는 더 높아질 것임.

- 2012년 최저임금이 4,580원이므로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의 100% 미만인 근로자들의 시간당 임금의 중간값과 평균값 모두 4,580원보다 낮음.
 - 최저임금의 200% 이상을 받은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의 평균값은 중간값보다 현저히 높다는 것을 관찰할 수 있는데, 이는 통상적으로 소득이나 임금이 우로 치우쳐 있다(positively skewed)는 것을 반영함.
- 시간당 임금의 차이는 월 임금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음.
 - 최저임금의 110% 미만을 받는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100만 원에도 못 미치는데, 이는 최저임금의 200% 이상을 받는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의 3분의 1보다 낮은 수준임.

가구의 구분

- 다음에서 다룰 세대(family)는 가구(household)와 다름.
 - 한국노동패널은 가구만 구분하고 있지 가구 내에 세대를 따로 구분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일정한 기준에 따라 가구를 세대로 쪼개야만 함.
- 가구주와의 관계를 이용하여 가구를 세대로 쪼갬.
 - 가구주의 자녀가 배우자나 자녀(가구주의 자녀의 자녀)와 함께 거주하면 그들을 독립된 세대로 구분하였음.
 - 간혹 가구주의 자녀의 배우자가 자녀(가구주의 자녀의 자녀)만 데리고 함께 거주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도 이들을 독립된 세대로 간주하였음. 이 경우에 자녀의 배우자가 세대주가 됨.
 - 결혼한 가구주의 형제자매가 가구주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와 결혼한 가구주의 자녀의 자녀가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삭제함.²⁾
 - 추가로 세대주의 부모 또는 조부모가 아니고 가구주의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도 아닌 세대원(세대주나 세대주가 아님) 중 나이가 만 25세 이상인 세대원을 별도 세대의 세대주로 간주하였음.³⁾

2) 이렇게 삭제되는 관측치는 전체의 1% 미만임.

3) 세대주 및 세대주의 배우자가 자신들의 부모나 조부모가 아닌 만 25세 이상인 다른 세대원을 부양할 의무가 없다고 보고, 이 다른 세대원을 별도 세대의 세대주로 간주하였음.

〈표 3〉 배우자가 있는 경우 임금근로 세대주와 배우자의 분포(세대주 임금 기준)

(단위 : %)

(세대주 임금)/(최저임금)	배우자 유무		유배우자 중 비중			
	유배우자	무배우자	무직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자영업	무급종사
0~70%	42.86	57.14	60.00	31.11	8.89	0.00
70~90%	38.71	61.29	68.75	31.25	0.00	0.00
90~100%	37.78	62.22	70.59	23.53	0.00	5.88
100~110%	31.19	68.81	67.65	23.53	8.82	0.00
110~130%	32.60	67.40	41.89	40.54	16.22	1.35
130~200%	42.61	57.39	47.95	42.27	9.46	0.32
200% 이상	57.39	42.61	52.07	39.79	7.89	0.24

- 기타 친인척이나 인척관계에 있는 동거인도 별도 세대의 세대주로 간주하였음.

임금근로 세대주 및 배우자의 세대주 임금 기준 분포

- 〈표 3〉은 배우자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의 비중 및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임금근로 여부에 따른 비중을 보여주고 있음.
 - 세대주의 임금수준별로 배우자 유무의 차이는 그리 크지 않지만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직업 유무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임.
 -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세대주의 배우자의 60% 이상이 무직인 상태에 있음. 이는 세대주의 최저임금 보다 높아질수록 배우자가 임금근로자로 일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것과 대조를 이룸.
 -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최저임금 이하 또는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는 세대주의 60% 이상이 외벌이로 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임.⁴⁾
- 〈표 4〉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의 세대주 소득별 비중을 보여주고 있음.
 - 단독세대의 비중이 높는데, 이는 만 25세 이상인 세대원을 별도 세대의 세대주로 간주하였기 때문임.
 - 특징적인 것은 세대주의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단독세대의 비중이 낮아지고 소득이 있는 세대원

이 둘 이상인 비중이 높아짐. 이는 최저임금 미만이나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는, 배우자가 없는 세대주는 다른 세대원의 소득으로 자신의 부족한 소득을 보완할 가능성이 낮지만, 최저임금의 2배 이상의 임금을 받는, 배우자가 없는 세대주는 다른 세대원의 소득으로 추가적인 소득을 올리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의미함.

- 〈표 5〉는 〈표 3〉에서 배우자가 임금근로자인 경우만 따로 뽑아서 세대주와 배우자의 임금수준별 분포를 보여주고 있음.⁵⁾
 - 세대주가 최저임금의 2배 이상을 받는 세대의 약 50%에서 배우자도 최저임금의 2배 이상을 받지만, 다른 세대의 경우에는 25% 이하에서만 배우자가 최저임금의 2배 이상을 받고 있음.

세대주와 임금근로 배우자의 배우자 임금 기준 분포

- 〈표 6〉은 배우자의 임금수준이 낮아질수록 세대주가 무직이거나 자영업 종사자일 가능성이 높고 임금근로자일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 배우자의 임금이 최저임금 미만이거나 최저임금 수준일 때 세대주의 20% 정도가 무직이고 30% 정도가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50%만이 임금근로자로 일을 하고 있음.
 - 평균적으로 자영업 소득이 임금근로자의 임금보다

4) 다른 세대원이 추가적인 수입을 올릴 수는 있으나 그 비중이나 금액이 크지 않음.
 5) 관측치가 많지 않아서 일부 현실성 없는 값들이 포함되어 있기도 함.

〈표 4〉 배우자가 없는 경우 임금근로 세대주와 배우자의 분포(세대주 임금 기준)

(단위 : %)

(세대주 임금)/(최저임금)	배우자 유무		무배우자 중 비중		
	유배우자	무배우자	비단독세대		단독세대
			단수소득	다수소득	
0~70%	42.86	57.14	6.67	21.67	71.67
70~90%	38.71	61.29	7.89	27.63	64.47
90~100%	37.78	62.22	3.57	28.57	67.86
100~110%	31.19	68.81	4.00	24.00	72.00
110~130%	32.60	67.40	12.42	30.72	56.86
130~200%	42.61	57.39	12.18	35.13	52.69
200% 이상	57.39	42.61	15.90	53.60	30.50

〈표 5〉 배우자가 있는 경우 임금근로 세대주와 임금근로 배우자의 분포(세대주 임금 기준)

(단위 : %)

(세대주 임금)/(최저임금)	0~70%	70~90%	90~100%	100~110%	110~130%	130~200%	200% 이상	전 체
0~ 70%	0.00	7.14	0.00	21.43	28.57	21.43	21.43	100.00
70~ 90%	6.67	20.00	13.33	0.00	40.00	13.33	6.67	100.00
90~100%	0.00	0.00	0.00	0.00	50.00	25.00	25.00	100.00
100~110%	0.00	12.50	12.50	12.50	25.00	25.00	12.50	100.00
110~130%	3.33	20.00	3.33	10.00	26.67	20.00	16.67	100.00
130~200%	1.49	11.94	2.24	14.18	26.87	29.85	13.43	100.00
200% 이상	1.60	4.01	2.00	6.01	14.03	26.25	46.09	100.00

〈표 6〉 세대주와 임금근로 배우자의 분포(배우자 임금 기준)

(단위 : %)

(배우자 임금)/(최저임금)	0~70%	70~90%	90~100%	100~110%	110~130%	130~200%	200% 이상
무직	32.26	27.47	15.63	22.86	11.22	15.59	19.43
임금근로자	38.71	51.65	53.13	53.33	62.44	62.71	67.10
비임금	자영업	29.03	20.88	31.25	22.86	26.34	21.69
	무급종사				0.95		0.26
전 체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낮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배우자가 최저임금 미만이나 최저임금 수준을 받는 세대의 절반이 세대주의 소득으로 세대의 전체 소득을 충분히 끌어올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 〈표 7〉은 〈표 6〉에서 세대주가 임금근로자일 때 세대주와 임금근로 배우자의 분포를 보여주고 있음.
 - 세대주가 임금근로자로 일을 할 경우 대체로 배

우자의 낮은 임금이 세대주의 임금으로 보전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음.

- 그러나 배우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의 1.3~2배 수준이거나 2배 이상일 때 세대주의 임금이 최저임금의 2배 이상일 확률이 약 70%와 90%인 데 비해 최저임금의 1.1배 미만일 때 세대주의 임금이 최저임금의 2배 이상일 확률이 50% 정도 밖에 되지 않음.⁶⁾

6) 이는 최저임금을 받는 배우자의 소득이 가구의 소득으로 충분히 보전되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은 낮다는 주장과 약간 다른 결과임.

〈표 7〉 임금근로 세대주와 임금근로 배우자의 분포(배우자 임금 기준)

(단위 : %)

(배우자 임금)/(최저임금)	0~70%	70~90%	90~100%	100~110%	110~130%	130~200%	200% 이상
0~ 70%	0.00	2.13	0.00	5.36	3.13	1.62	1.16
70~ 90%	8.33	6.38	11.76	0.00	4.69	1.08	0.39
90~100%	0.00	0.00	0.00	0.00	1.56	0.54	0.39
100~110%	0.00	2.13	5.88	1.79	1.56	1.08	0.39
110~130%	8.33	12.77	5.88	5.36	6.25	3.24	1.93
130~200%	16.67	34.04	17.65	33.93	28.13	21.62	6.95
200% 이상	66.67	42.55	58.82	53.57	54.69	70.81	88.80
전 체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세대주의 임금수준별 세대의 경제적 상황⁷⁾

- 〈표 8〉은 배우자가 있을 때 세대주의 임금수준에 따른 세대주와 세대 전체의 시간당 임금과 월 임金的 평균값을 보여줌.
 - 세대주가 최저임금 미만이나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을 때 세대 전체의 임금이 150만 원에 미치지 못하며, 이 임금 소득으로 약 2.5명의 세대원이 생계를 유지하고 있음.
 - 배우자가 있더라도 배우자가 일을 하느냐 일을 하지 않느냐에 따라 세대의 임금소득은 많은 차이가 날 것임.
- 〈표 9〉는 세대주가 임금소득자이지만 배우자가 일을 하지 않을 때 세대주와 세대 전체의 임금소득을 보여주고 있음.

- 배우자가 일을 하지 않으면 다른 세대원의 임금소득이 거의 없어서 세대 전체의 소득이 세대주의 소득과 차이가 거의 없음.
- 반면 세대원의 수는 배우자의 무직 여부와 관계없이 거의 일정함.
- 따라서 배우자가 무직이고 세대주가 최저임금 미만이나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을 때, 세대 전체의 소득은 120만 원이 채 되지 않으며, 이것으로 약 2.5명이 생계를 유지해야 함.
- 배우자가 일을 하는 세대의 경제상황은 배우자가 일을 하지 않는 세대와 상당히 다름.
 - 세대주가 최저임금 미만이나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아도 이 세대의 임금소득은 월 240만 원에 이릅니다. 이는 배우자가 일을 하지 않는 경우에 세대 전체 임금소득의 2배가 넘는 수준임.

〈표 8〉 배우자가 있을 때 세대주의 임금수준별 세대의 임금소득 수준

(세대주 임금)/(최저임금)	시간당 임금(천 원)		월 임금(만 원)		세대원 총수
	세대주	세대 총합	세대주	세대 총합	
0~ 70%	1,924	5,085	60	120	2.49
70~ 90%	3,664	5,626	97	135	2.33
90~100%	4,375	6,383	109	141	2.69
100~110%	4,726	6,450	106	145	2.68
110~130%	5,502	8,763	117	178	2.57
130~200%	7,681	11,440	170	241	3.08
200% 이상	17,750	22,493	338	421	3.44

주: 배우자가 자영업자나 무급가족종사자로 일하는 경우는 제외.

7) 여기의 경제적 상황에는 오로지 임금소득만 고려되지 자영업 소득이나 이전소득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표 9〉 배우자가 무직일 때 세대주의 임금수준별 세대의 임금소득 수준

(세대주 임금)/(최저임금)	시간당 임금(천 원)		월 임금(만 원)		세대원 총수
	세대주	세대 총합	세대주	세대 총합	
0~ 70%	2.190	2.467	67	72	2.41
70~ 90%	3.610	3.610	92	92	2.21
90~100%	4.385	4.385	112	112	2.75
100~110%	4.713	4.910	105	111	2.61
110~130%	5.464	5.464	113	113	2.29
130~200%	7.714	8.218	173	182	2.94
200% 이상	18.200	18.362	351	354	3.40

〈표 10〉 배우자가 임금근로자일 때 세대주의 임금수준별 세대의 임금소득 수준

(세대주 임금)/(최저임금)	시간당 임금(천 원)		월 임금(만 원)		세대원 총수
	세대주	세대 총합	세대주	세대 총합	
0~ 70%	1.411	10.134	46	212	2.64
70~ 90%	3.785	10.063	106	228	2.60
90~100%	4.347	12.377	101	230	2.50
100~110%	4.763	10.875	111	243	2.88
110~130%	5.541	12.172	120	244	2.87
130~200%	7.644	15.095	167	309	3.24
200% 이상	17.161	27.900	322	509	3.49

〈표 11〉 배우자가 없지만 다른 세대원이 존재할 때 세대주의 임금수준별 세대의 임금소득 수준

(세대주 임금)/(최저임금)	시간당 임금(천 원)		월 임금(만 원)		세대원 총수
	세대주	세대 총합	세대주	세대 총합	
0~ 70%	2.194	5.934	59	131	3.53
70~ 90%	3.719	5.496	79	112	3.41
90~100%	4.316	8.015	88	158	3.00
100~110%	4.705	7.011	96	134	3.33
110~130%	5.505	9.538	111	189	3.09
130~200%	7.613	11.037	155	220	2.92
200% 이상	16.976	21.919	317	408	3.26

〈표 12〉 단독세대일 때 세대주의 임금수준별 세대의 임금소득 수준

(세대주 임금)/(최저임금)	시간당 임금(천 원)	월 임금(만 원)
0~ 70%	2.326	51
70~ 90%	3.782	74
90~100%	4.343	105
100~110%	4.736	95
110~130%	5.474	109
130~200%	7.563	153
200% 이상	13.926	253

- 〈표 11〉은 배우자가 없지만 다른 세대원이 있는 경우의 임금소득을 보여주고 있음.
 - 세대 전체의 소득은 세대주의 소득에 비해 높으며, 세대주의 소득에 비례함.
 - 특징적인 것은 배우자가 있는 경우보다 세대원의

수가 많다는 것임. 따라서 세대주의 임금소득을 구간별로 보면, 세대 전체의 소득이 〈표 10〉에 있는 배우자가 일을 하지 않을 때의 소득보다 많음에도 불구하고 세대의 경제적인 상황이 더 낫다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기는 힘들 것임.

〈표 13〉 배우자의 임금수준별 세대의 임금소득 수준

(배우자 임금)/(최저임금)	시간당 임금(천 원)		월 임금(만 원)		세대원 총수
	배우자	세대 총합	배우자	세대 총합	
0~ 70%	2,149	6,992	44	135	2.48
70~ 90%	3,754	9,597	74	195	3.00
90~100%	4,352	11,105	84	214	3.03
100~110%	4,726	11,436	92	226	3.06
110~130%	5,525	12,920	103	248	3.22
130~200%	7,298	16,359	137	309	3.41
200% 이상	15,450	27,149	273	491	3.38

■ 〈표 12〉는 단독세대의 소득을 보여주고 있음.

임금근로 배우자의 임금수준별 세대의 경제적 상황

■ 〈표 13〉은 배우자의 임금수준별 세대의 임금소득 수준을 보여주고 있음.

- 배우자가 최저임금 미만이나 최저임금 수준을 받을 때 세대 전체의 임금소득은 약 200만 원 정도이며, 이것으로 3명 정도의 세대원이 생계를 유지하고 있음.

결론

- 최저임금 결정 시 개인의 경제적 상황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세대(family)의 경제적 상황이 어떤지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할 것임.
 - 만약 단독세대가 아닌 세대의 경제적 상황이 단독세대보다 못하다면 최저임금 결정 시 고려해야 할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이기 때문임.
 - 최저임금 또는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단독세대의 월 소득은 50만~100만 원임.

■ 비단독세대의 경제적 상황이 결코 단독세대보다 낮지 않음.

- 배우자가 임금근로자로 일을 하고 있는 세대의 경우 세대주가 최저임금 또는 최저임금 미만을 받더라도 세대 총 임금소득이 200만 원이 넘고 세대원의 수가 약 2.5명이어서 단독세대보다 상황이 좋다고 할 수 있을 것임.
- 그러나 배우자가 일을 하지 않을 세대의 경우 세대주가 최저임금 또는 최저임금 미만을 받을 경우 세대 총 임금소득은 70만~110만 원에 그치고 있고 세대원의 수가 약 2.5명이어서 단독세대와 비슷한 수준의 소득으로 2.5배의 세대원이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상황임.
- 더구나 세대주가 최저임금 또는 최저임금 미만을 받을 때 배우자가 임금근로자로 일을 하는 경우보다 배우자가 일을 하지 않는 비율이 훨씬 더 높은데,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 배우자가 없지만 다른 세대원이 존재하는 세대의 경제적 상황도 단독세대에 비해 낮지 않음.

오상봉(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02-3775-5648 / soh@kli.re.kr

※ 본 자료는 한국노동연구원 홈페이지 www.kli.re.kr 을 통하여 항상 보실 수 있습니다.